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서귀포공립요양원 신규직원 7차채용 재공고 및 일정변경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서귀포공립요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신규직원 7차채용 재공고 및 일정을 변경합니다.

※재공고 근거: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6항 (공고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

2023년 7월 18일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1. 채용인원 및 분야

근무지	채용분야	인원	주요 직무내용(예정)
서귀포 공립요양원	요양보호사	4명	· 일상생활지원 및 신체활동지원, 기능회복훈련 등
	조리원	1명	· 급식관리 및 조리실 시설관리 등
합 계		5명	

2.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구 분	채용분야	근무조건	
서귀포 공립 요양원	요양보호사 / 조리원	고용형태	정규직
		근무시간	주 5일 주 40시간 [1일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별도] ※ 서귀포공립요양원 운영 상황에 따라 교대근무 및 근무시간 조정될 수 있음
		보 수	연봉제(서귀포공립요양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수탁 운영 중인 서귀포공립요양원 및 서귀포공립요양원 주간보호센터 간 전보 발령 할 수 있음

※ 정규직의 경우 최초 임용일로부터 6개월간 수습기간을 둔 후 근무실적 등의 평가에 따라 정규직 임용 여부 결정

※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경우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가능

○ 근무지

- 서귀포공립요양원(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7166)

3. 응시자격 조건

가. 공통요건(공고일 기준)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만 60세 미만인 자(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경우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가능)
- 지역 우수인재 보호·육성을 위해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었던 기간(말소 및 거주 불명기간 제외)이 총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 성별제한 :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로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 인사청탁 등 채용관련 부정행위로 공공기관채용이 취소된 적이 없는 자
-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구분	결격사유	비고
서귀포공립요양원	제주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	[참고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참고2]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참고3]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참고4]

○ 상기조항에 위배되는 자는 임용이 확정된 후라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직급별 자격기준(공고일 기준)

○ 다음의 각 직급별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직 급	자 격 기 준
요양보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치매전문교육 이수자 ▪ 교대근무 가능자
조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 관련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다. 가점기준(우대사항)

구 분	대 상	우대 요건	가점	증빙서류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면접 각 항목 40% 이상 특점 시	법령에 따라 만점의 5% 또는 10%	공고일 이후 국가보훈 처장이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자		면접 만점의 5%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②) .청년 미취업자(만34세 이하)(③)		동점자 우선 채용	증명서
치매전문 교육	.시설 치매전문교육 수료자(④)			수료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법률의 적용기준을 따름 ○ 사회적취업 취약계층 및 치매전문교육 수료자의 경우, 면접시험 동점자 발생 시 ①→④ 순으로 우대 ○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됨(중복 적용 불가)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하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시험단계 및 채용절차

- 채용방법 : 수시 공개경쟁채용
- 시험단계 : 서류전형 → 필기시험(인성검사) → 면접시험
- 채용절차



※ 전(前) 단계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단계의 응시자격 부여

5. 시험세부내용

가.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1) 채용공고

- 공고기간 : '23. 7. 18.(화) ~ 7. 28.(금)
- 공고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도청 홈페이지 등

2)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3. 7. 18.(화) ~ **7. 28.(금), 17:00 마감**
- 접수방법 :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jpcare@jeju.pass.or.kr)
- 방문접수 : 서귀포공립요양원(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7166)
- 응시직위 : 요양보호사, 조리원
 - 제출된 서류는 지원자격 적격여부 및 서류심사를 위해 사용
 - 채용 형식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 기타사항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월~금 09:00~18:00)에만 가능함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접수불가)
- 문의전화 : 070-8805-4899(돌봄서비스지원팀)

나. 서류전형

1) 일자/장소 및 시험위원

- 서류전형 : '23. 7. 31.(월)
- 시험위원 : 2명(내부위원)

2) 심사방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응시자격 적격여부 결정
※ 응시자격 부적격, 제출서류 미비자를 제외한 전원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응시기회 부여

3) 합격자 결정

평가항목	합격자 결정 기준	비 고
· 응시자격 적격/부적격 여부	· 채용분야 응시자격이 "적격"인 자	

4) 서류전형 합격자 및 필기시험 대상자 통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3. 7. 31.(월)
- 통지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다. 필기시험(인성검사)

1) 일자 및 장소

- 일 자 : '23. 8. 1.(화)
- 장 소 : 서귀포공립요양원

2) 대상 및 출제방법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출제방법 : 인성검사 문제지 (240문항, 40분간 진행)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중 하나)
반드시 지참. 미지참 및 본인확인 불가 시 필기시험 응시 불가
※ 개인필기도구(볼펜, 수성싸인펜, 수정테이프) 반드시 지참

3) 필기시험 결과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로 활용**

4) 면접전형 대상자 통지

- 일 자 : '23. 8. 2.(수)
- 통지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라. 면접시험

1) 일자/장소 및 시험위원

- 일 자 : '23. 8. 3.(목)
- 장 소 : 서귀포공립요양원
- 시험위원 : 3명(내·외부위원)

2) 심사방법 : 면접위원별 질의응답식 심층면접 실시

- 대면 면접(질의응답식-공통)

면접 평정요소		배 점
① 공적 책무성, 서귀포공립요양원의 목적성 부합여부 (20점)	④ 인성 및 직업관(20점)	100점
② 이해력 및 지식수준 (20점)	⑤ 창의성 및 전문성(2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20점)		

※ 면접전형결과 시험위원 평균점수 60점미만인 자는 불합격처리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반영하고, 나머지는 절사

○ (예비합격자 제도) 각 채용직위별 2배수 (차순위 득점자)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채용결격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예비합격자(면접전형 고득점자 순) 순번(채용분야별 선발인원의 2배수 이내)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6. 채용 전형 일정

구 분	일정	비 고
채용공고	‘23. 7. 18.(화) ~ 7. 28.(금) (10일간)	제주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등 공고
지원서접수	‘23. 7. 18.(화) ~ 7. 28.(금) 17:00까지	방문 및 이메일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3. 7. 31.(월)	제주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필기시험(인성검사)	‘23. 8. 1.(화)	서귀포공립요양원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7166) *시험전형 20분 전 입실
면접전형 대상자 통지	‘23. 8. 2.(수)	
면접전형	‘23. 8. 3.(목)	
최종합격자 발표	‘23. 8. 4.(금) 예정	제주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
임용등록기간	‘23. 8. 4.(금) ~ 8. 8.(화) 17:00까지	방문접수
임용	‘23. 8. 9.(수) 예정	

※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단계별 일정공고 시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

7. 제출서류

- 접수방법 :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jpcare@jeju.pass.or.kr)
- 방문접수 : 서귀포공립요양원(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7166)
- 기타사항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월~금 09:00~18:00)에만 가능함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 12:30~13:30 접수불가)

구분	주요내용		비고
입사 지원서 접수	공통 제출 서류	1. 응시원서 [서식 1] 2. 자기소개서 [서식 2]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3] 4. 재직/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 등본 미인정) (공고일 이후발행, 주소변동 기재, 개명·병역사항 포함) 7. 직무관련 면허(자격)증 사본	
	해당자 제출	1.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2. 장애인증명서	가점기준
		1. 취업취약계층 증명서 2. 시설 치매전문교육 수료증	우대사항
최종 합격자		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채용신체검사서 (일반채용 신체검사서-감염성질환 및 정신질환 검사를 포함하거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4. 보건증 5. 주민등록 등본(13자리 모두 표시) 6-1.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6-2.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동의서 7.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또는 음성확인 문자(임용예정 3일 이내) 8. 6개월 이내 반명함 사진 1부(3*4cm) 9.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기타 서류는 별도 안내	

※ 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 서류의 불일치,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 판명 시 합격 및 임용 취소

※ 직무관련 면허(자격)증 사본 외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 여야 함

8. 최종합격자 결정 및 통지

가.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

구분	면접 평정요소	합격자 결정 기준
공통 사항	①공적 책무성, 서귀포공립요양원의 목적성 부합여부 ②이해력 및 지식수준 ③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인성 및 직업관 ⑤창의성 및 전문성	· 모든 시험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후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동점자 처리】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장애인 - 3순위: 사회적취업취약계층 및 치매전문 교육이수자(①→④순으로우대) - 4순위: 면접 평정요소 고득점 순 (①→②→③→④→⑤) ※ 면접전형 결과 시험위원 평균 점수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반영하고, 나머지는 절사

나. 최종 합격자 통지

- 합격자 발표: '23. 8. 4.(금) 예정
- 통지방법: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다. 임 용

- 임용예정일 : '23. 8. 9.(수) 예정
-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원장과 근로계약 체결
- ※ 입소자모집 추이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9. 응시자 권리보호 제도안내

가. 이의신청 절차 안내

- 접수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 접수방법: “채용결과 이의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서명한 후 사회서비스원 경영기획팀으로 제출
-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답변 처리
-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

나. 채용서류 반환

- 운영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청구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 접수방법: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서명한 후 사회서비스원 경영기획팀으로 제출
- 반환방법: 입사지원서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비용은 청구인이 부담)

10. 기타사항

- 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므로 수시 확인 바랍니다.
- 나.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 정보가림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견될 경우 전형별 단계에서 임의로 가림 처리됩니다.
- 라.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인 것으로 확인되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마.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는 즉시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사회서비스원의 모든 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 바.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통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가점 확인 및 자격 확인용 증빙자료를 제출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사. 채용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 최종 합격자의 근무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임용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자. 임용 예정일 이후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차. 입사지원서 접수마감 후에는 기재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카. 채용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합격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타. 지원자격 요건 심사 및 급여 반영을 위한 경력 기간은 입사지원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요건 서류 적부심사 시 결정되며,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추가제출 서류는 불인정 합니다.
- 파. 그 밖에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돌봄서비스지원팀 (070-8805-489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사회서비스원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부정합격이 확인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1】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인사관리 규정 제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서 규정한 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서 규정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